공정한 국제질서의 수립과정에 대한 리해

오향미

공정한 국제질서를 하루빨리 수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새 세기 과제로 내세운 발전과 번영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자주성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90권 304폐지)

공정한 국제질서는 정의와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질서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특권과 전횡이 없고 자주권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는 국제질서이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무엇보다먼저 불공평한 낡은 국제기구가 해체되거나 개혁되며 새로운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는데 따라 수립되게 된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우선 불평등한 낡은 국제기구의 해체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불평등한 낡은 국제기구의 해체는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의 선결조건이다.

불평등한 낡은 국제기구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들의 일방적인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도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협조》의 간판밑에 반동적인 기구들을 조작하고 그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대표적으로 《국제련맹》은 그가 존속하는 기간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도구로 복무하였다. 《국제련맹》의 묵인밑에 1935년 10월 이딸리아는 선전포고없이 에티오피아에 쳐들어갔으며 인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패망하였다. 당시 《국제련맹》은 이딸리아에 대한 아무러한 효과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형식상 선포하였던 경제제재의막뒤에서 영국, 프랑스가 이딸리아에 무기를 공급하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못본체 하였다.

그러나 렬강들의 침략과 략탈에 리용되던 《국제련맹》은 력사의 필연에 따라 1946년 4월 정식 해산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침략적이고 불평등한 국제기구는 해체되기마련이며 그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에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반동적인 국제기구들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 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을 기본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951년에 미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사이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동맹》이, 1954년에 《동남아시아조약기구》가, 1955년에 《바그다드조약기구》(1959년에 《중앙조약기구》로 바뀌여짐)가 조작되였다.

미제의 압력과 회유 등으로 이 기구들에 끌리워들어간 나라들은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걸을수 없었다.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과 건설에는 인위적인 장애가 조성되었으며 매개 나라와 지역의 자주성실현은 엄중한 도전을 받게 되였다.

현실적으로 미제는 《중앙조약기구》를 리용하여 1958년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의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이라크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파괴책동과 중근동에서의 침략과 간섭, 략탈을 위한 여러가지 범죄적만행을 저질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침략적기구들은 그 반동성으로 하여 성원국들 내부에서까지 반발에 부딪치게 되였으며 마침내 해체되고말았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와 《중앙조약기구》등의 해체로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은 실현될수 없게 되였으며 세계의 자주화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되였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또한 불평등한 낡은 국제기구들이 개혁되는데 따라 수립되게 된다.

공정한 국제질서수립과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국제기구들이 개혁되는 과정이다.

국제기구들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자주권과 평등, 단결과 협력, 평화와 안전 등을 자기의 목적과 사명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실천은 적지 않은 국제기구들이 지배주의자들의 강권정치에 눌리 워 그의 도구로 리용되여왔음을 보여주고있다.

국제기구자체의 불공정성을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어떻게 란폭하게 유린하는가는 유엔의 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유엔은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많은 비법적인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유엔이 남긴 이러한 오점은 큰 나라들만이 불공정하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기구자체의 불공정성은 그 창시국들, 큰 나라들이 아무리 합리화하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결코 영원할수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민족국가들의 국제무대에로의 진출은 불합리한 국제기구들을 개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비록 령토가 작고인구수는 많지 않으며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지만 어느 국가나 기구의 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질것을 요구하였다.

유엔을 무대로 한 대외활동과정에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발견하였으며 일부 나라들의 특권과 전횡이 허용되는 반면에 자기들의 자주권과 리익이 침해되고 무시당하는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과정에 기구자체내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기구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책동의 중요한 공간이며 그것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전변시킬 때 공정한 국제질서가 수립될수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자주력량은 집단적으로 유엔의 개혁을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으며 그 투쟁속에서 유 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이 개혁되였다. 물론 이것은 큰 성과라고는 말할수 없지만 그것은 유엔개혁에서의 첫걸음이고 자주력량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 유엔의 대다수 성원국들과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특히 상임리사국의 거부권제도를 폐지하거나 상임리사국의 의석을 비상임리사국들에게도 부여하고 그들도 필요한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게 할데대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으며 안보리사회에 비한 총회의 권능을 높일것을 주장하고있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또한 새로운 국제기구가 창설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는데 따라 수립된다.

새로운 국제기구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그 들자신이 조직하는 기구이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정에 기구성원국들은 점차 현존하는 국제기구의 틀거리에서는 자기들의 자주성을 옳게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파악하게 되였다. 기구의 개혁을 요구하면 서도 당장은 실현되기 힘들며 혼자서는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어렵기때문에 밀접하고 활발한 다무적관계가 시급히 요구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나라들의 공동의 의사와 노력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구가 창설되게 되였다.

아메리카대륙에서 조직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알바)과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창설이 대표적실례이다.

자주시대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은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것은 평화와 안전, 안정을 이룩하는것이며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조종추동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 다.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절감하고 새로운 국제기구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들의 창설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이 급속히 추진되고 지역 적, 세계적범위에서 점차 공정한 국제질서가 수립되게 되였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아프리카동맹과 같은 국제기구창설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발전이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아프리카뿐아니라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도처에 서 자주력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국제기구들이 수많이 창설되고있으며 기구의 역할 이 높아지는데 맞게 공정한 국제질서가 수립되여나가고있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다음으로 자주력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국제법이 마련되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는 과정에 수립된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우선 자주력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국제법이 마련되는데 기 초하여 수립된다.

자주력량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국제법이 마련되는 과정은 기존법이 수정되며 새로운 법이 채택되는 과정이다.

국제법의 변화발전은 중요하게 국제관계, 국제법의 당사자들이 달라지고 력량관계가 변화되는것과 관련된다.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에는 그 제정자, 채택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직후에 나온 국제법들은 대다수가 큰 나 라들의 의사를 반영한 법들이다.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유엔의 창설이후에야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많 은 경우 국제법의 제정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참가하는 경우에도 큰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집단적행동능력이 강화되여나감에 따라 사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점차 자기들의 동등한 권리 를 주장해나섰으며 불평등한 국제법들을 수정보충할것을 요구하였다.

공정한 국제법의 마련은 그에 대한 자주력량의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자주력량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현존하는 국제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자주권침해를 직접체험하였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현존하는 국제법의 불공정성을 폭로하며 새로운 국제법의 채택을 요구해나섰다.

불공정한 국제법을 수정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고 하여 그 실현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국제법을 내온 당사자들은 그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하기때문에 그들의 도전을 물리쳐야 현존하는 국제법의 수정과 보충 등이 실현될수 있다.

자주시대의 전진속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의식은 점차 높아지며 그들의 단합과 투쟁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다. 자주력량은 견결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새로운 국제법을 마련해나가며 그에 기초하여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고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과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수립은 이러한 합법칙적과정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해양과 관련한 포괄적이며 완벽한 국제조약의 마련은 세계적범위에서의 공정한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서 중요한 법적기초로 되였다.

공정한 국제질서는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철 저히 준수해나가는 과정에 수립된다.

국제법은 단순히 그것을 제정하는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와 공고한 법적질서의 수립에 있으며 그속에서 나라와 민족들의 요구와리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그 기초인 국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국제관계의 원칙과 규범들이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문제는 일부 나라들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기때문이다. 특히 미제는 국제법을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있다. 유리할 때에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도 불리하면 서슴없이 유린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국제법도 아랑곳없이 백주에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아무리 우심해도 력사의 법칙은 거역 할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들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는데 따라 공정한 국제질서가 수립되게 된다.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는 법에 규제된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것이며 의무를 성실하게 리행하는것이다.

매개 나라가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자주적대를 확고히 고수해나가면 큰 나라들도 어쩔수 없다.

200n·mile경제수역권제도의 수립과정이 이것을 똑똑히 확증해주고있다. 200n·mile경제수역권은 1972년 6월 해양법에 관한 아프리카지역토론회와 1973년 아프리카나라들의《나이로비선언》그리고 1973년 5월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성명, 그해 9월 제4차 쁠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결의들에서 거듭 확인되였다. 1970년 대 중엽부터 많은 나라들이 200n·mile경제수역권을 선포하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기시작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200n·mile경제수역권문제가 토의되고 해양법협약에 밝힘으로써 200n·mile경제수역권질서가 수립되게 되였다.

이처럼 공정한 국제질서는 국제법이 마련되고 국제관계의 당사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나감에 따라 수립되게 된다.

우리는 공정한 국제질서의 수립과정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낡은 국제질서를 없애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